

## 증평군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규정 [ 2012. 9. 17 ]

[ 훈령 제78호 ]

일부개정 2023. 11. 10 훈령 제165호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효율적인 홍보를 통하여 군의 위상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증평군 홍보대사(이하 “홍보대사”라 한다)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임무) 홍보대사의 주요활동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군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에 관한 사항
2.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
3. 지역축제 홍보 등 관광 활성화에 관한 사항
4. 지역특산물 홍보 등 농업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
5.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

제3조(위촉) 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. <개정 2023. 11. 10>

1. 군의 위상제고 및 관광 활성화에 부합되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
2. 군의 경제적·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외 인사
3. 그 밖에 인지도가 높아 군의 홍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자

② 제2조 각 호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로 홍보대사를 위촉할 수 있다. <신설 2023. 11. 10>

③ 제2항의 홍보대사를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주관부서에서 문화관광과장에게 사전에 요청하여야 한다. <신설 2023. 11. 10>

④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제2항에 따라 홍보대사를 위촉하는 경우에는 그 임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. <개정 2023. 11. 10>

제4조(해촉) 군수는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중이라 하더라도 해촉할 수 있다.

1.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

증평군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규정

2.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
3. 홍보대사로서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
4. 그 밖에 직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

제5조(운영) ①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은 군정 홍보업무 담당부서에서 주관한다.

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2조 각 호의 임무 중 특정 임무만을 부여하여 홍보대사를 위촉 및 운영할 수 있다.

제6조(보상)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, 제2조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부칙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2023. 11. 10 훈령 제165호)

제1조(시행일)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훈령 시행 전에 위촉된 홍보대사는 이 훈령에 의해 위촉된 것으로 보고, 그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.